



“서울을 이끄는 송파”

송파구



수신자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내 정류소 정차질서문란행위 단속 예고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관내 버스전용차로(송파대로)내 버스정류소에는 노선버스 승객만 승·하차를 하여야 하나, 노선버스 이외에 「회사, 공공기관, 통근버스」 전세버스 등이 노선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이용객들을 승·하차 시켜,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정상적인 진입을 방해하는 등,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전세버스 등이 노선 버스정류소에 잠시 정차하여 이용객들을 승·하차 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6조를 위반하는 행위임을 알려 드리니 노선 버스정류소 내 **【정류소 정차질서문란행위】**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류소 정차질서문란행위 처분 근거 1부. 끝.

송 파 구 청



안전하고 건강한 송파 / 아이 키우기 편한 교육도시

★주무관 박용배 버스택시관리팀장 정병록 교통과장 02/05 조재현

협조자

시행 교통과-7293 (2021.02.05.) 접수 ()

우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 http://www.songpa.go.kr
전화 (02)2147-3214 /전송 (02)2147-3889 / 이메일:djffnr2@songpa.go.kr / 부분공개(6)

□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단속(처분청) : 교통지도과, 자치구(자치구)

○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훈령·예규 등)													
<p>○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p> <p>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2.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5. 21., 2015. 1. 6., 2017. 3. 21., 2017. 10. 24., 2018. 8. 14.></p> <p>○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p> <p>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p> <p>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킴으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p> <p>○ 제85조(면허취소 등)</p> <p>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p>	<p>○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p> <p>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p> <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4. 14.></p> <p>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제43조제1항 관련)</p> <p>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p> <table border="1" data-bbox="571 1556 1050 2027"> <thead> <tr> <th rowspan="2">위반내용</th> <th rowspan="2">근거 법조문</th> <th colspan="3">처분내용</th> </tr> <tr>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26.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td> <td>법 제85조제1항제21호</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6.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1호				<p>○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p> <p>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12. 2., 2012. 11. 23., 2014. 7. 29., 2014. 12. 5., 2016. 1. 6., 2018. 2. 12., 2019. 12. 26.></p> <p>[별표 4] <개정 2018. 2. 12.></p> <p>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4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p> </div>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6.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1호														

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2. 2. 1., 2012.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 28., 2014. 5. 21., 2015. 1. 6., 2017. 3. 21., 2017. 10. 24., 2018. 8. 14., 2018. 9. 18., 2020. 6. 9.>
21.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88조(과징금 처분)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4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마. 성류소에서 주자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운행	운행
	정지	정지
	(5일)	(10일)

○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 11. 27.>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4. 14.>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법조문	위반횟수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
			시내	외곽	일반	개업	전세	특수	수요	
			버	버	택	택	버	여	용	대

		스 · 농 이 촌 버 스	스	시	시	스	객	담 행	여 사 업
18. 법 제21 조제13 항에 따 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 85조 제1항 제21 호								
마. 정류소 에서 주 차 또는 정차 질 서를 문 란하게 한 경우		1차 2차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4. 1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9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 반한 경우				
1)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 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 조제3 항제4 호	50	50	50
2) 1)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 조제3 항제4 호	10	10	10